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21. 5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서, 시설배치계획 등을 갖추어 사업의 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서류의 종류·승인절차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위치도,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계획평면도·공사설명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위치도 등의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의 세부처분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5.21.~6.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 1건(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에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축소(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

시설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⑥ 법 제10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채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⑦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항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보칙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2.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및 그 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공사중지 1개월 및 그 중지기간에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5. 법 제22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신공항건설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사업명칭			
위 치			
업 종		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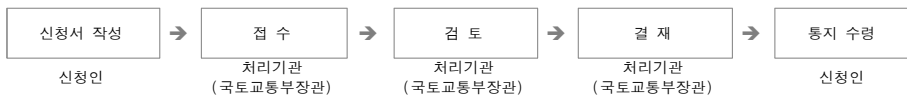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

허가번호	
신청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명칭	
위 치	
사업내용	
허가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시행사)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명칭			
위 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 종		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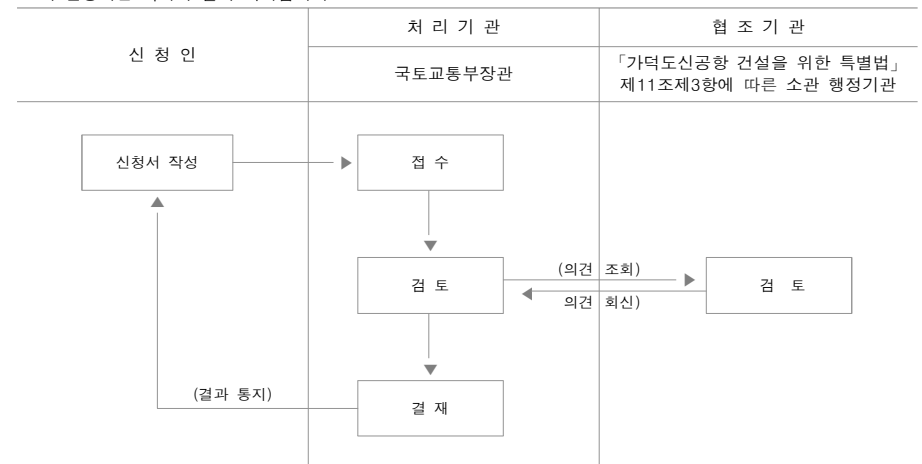
210mm×297mm [보존용지(2중) 70g/㎡]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사업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명칭		
위 치		
승인일자	착공(예정)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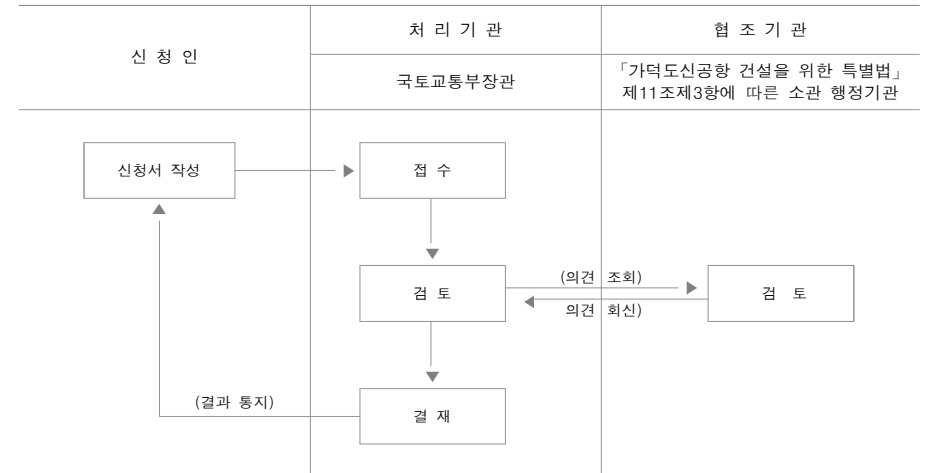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칭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승인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앞 쪽)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진 3cm × 4cm  (재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분(Occupation):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뒤 쪽)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 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국토교통부장관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발행일자(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80mm × 50mm [보존용지(1종) 120g/㎡]	